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운반용기의 재질이 아닌 것은? (2)

운반용기의 재질 : 강판 · 알루미늄판 · 양철판 · 유리 · 금속판 종이 · 플라스틱 · 섬유판 · 고무류 · 합성섬유 · 삼 · 짚 · 나무

2. 고체위험물의 운반 시 내장용기가 금속제인 경우 내장용기의 최대 용적은 몇 L 인가?
(3)

고체 위험물의 운반 시 내장용기가 금속제인 경우 내장용기의 최대 용적은 30L이며,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10L이다.

3. A 업체에서 제조한 위험물을 B 업체로 운반할 때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2배 이상인 경우이다.) (1)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할 때는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

4.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2)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한다.

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한 위험물 운반 및 수납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적재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한다.

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적재하는 위험물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9. 적재시 일광의 직사를 피하기 위하여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은?
(2)

10. 운반할 때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4)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TNT, 이황화탄소, 과염소산은 모두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11. 위험물을 적재, 운반할 때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

니트로화합물은 제5류 위험물로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한다.

1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2)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 위험물의 품명 · 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는 제외한다.) (4)

1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용기의 용적은 10L 이며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2)

1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옳게 나타낸 것은? (2)

제1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기타 :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1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중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하였다. 어떤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1)

18.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에 "화기엄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19.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의 운반용기 외부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제2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 기타 : "화기주의"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중 철분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2)

21.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틀리게 연결한 것은?
(4)

제6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가연물접촉주의"이다.

22. 과산화수소의 운반용기에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3)

제6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가연물 접촉주의"이다.

23.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을 잘못 나타낸 것은? (4)

24.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표시하는 주의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3)

- ① 염소산칼륨 –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② 철분 – 화기주의, 물기엄금
- ④ 질산 – 가연물접촉주의

25.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나타낸 것 중 틀린 것은?
(3)

황린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이므로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2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7.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당해 차량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직사각형 표지 규격으로 옳은 것은?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차량에 설치할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의 판으로 해야 한다.

28.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게시판의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바탕은 흑색으로 하고. 황색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2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지정수량에 관계없이 그 양의 다소를 불문하고 운반의 규제를 받는다.

3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1)

위험물의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X	X	X	X	O	
제2류	X	X	O	O	X	
제3류	X	X	O	X	X	
제4류	X	O	O	O	X	
제5류	X	O	X	O	X	
제6류	O	X	X	X	X	

31. 위험물 운반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다음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각각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로 가정한다.) (3)

3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혼재가 가능한 것은? (4)

33.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서로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유별은? (2)

34.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혼재가 가능한 것은? (4)

35. 위험물 운반시에 혼재가 금지된 위험물로 올바르게 짹지어 놓은 것은? (단, 지정수량의 1/10 초과이다.) (1)

36. 제3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 몇 류 위험물인가? (단,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이다.) (3)

37.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중 혼재가 금지된 경우는? (4)

38. 과산화나트륨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이다.) (4)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이므로 제6류 위험물인 과염소산과 혼재가 가능하다.

3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위험물의 적재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5배인 경우이다.) (2)

경유는 제4류 위험물로서 제2류, 제3류, 제5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데, 제5류 위험물인 질산메틸과 혼재가 가능하다.

4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3)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경유는 제2석유류 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